

증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[2012. 10. 19 조례 제445호]
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6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일부개정 2017. 12. 28 조례 제 791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(제명개정)
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5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일부개정 2020. 12. 29 조례 제 955호
(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
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
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7호
(조직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
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·모성보호·보육
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28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 12. 28,
2020. 12. 29>

1. “여성농업인”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
을 말한다.
2. “여성어업인”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
말한다.
3. 삭제 <2017. 12. 28>
4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5. 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
말한다.

제3조(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) ①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여성농어업

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·평가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·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함으로써 농업·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8>

[제목개정 2017. 12. 28]

제4조(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)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은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농어업·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8>

[제목개정 2017. 12. 28]

제5조(지원범위)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1.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군수가 제1호, 제2호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위원회)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 12. 28>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8>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7. 12. 28, 2018. 12. 28, 2022. 12. 29>

1. 당연직 위원 : 행복돌봄과장, 농업유통과장, 축산산림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

2. 위촉직 위원 :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,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
〈개정 2013. 11. 8, 2017. 12. 28〉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·의결한다.
〈개정 2017. 12. 28〉

1.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
2.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
3.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5.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
2.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

제11조 삭제 <2022. 12. 29>

제12조(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)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1.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, 농어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
2.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과 지원
3.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
4.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
5.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
6.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의 환경조성사업 추진
7. 여성농업단체가 실시하는 상담 등 활동 지원
8.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촉진
9.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교류활동 지원
10.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8>

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.

[제목개정 2017. 12. 28]

제13조(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)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1.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·현장·부부공동 교육
2.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문화·교양·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
3.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(국내 및 국외연수 등)
4.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

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[제목개정 2017. 12. 28]

제14조(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)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·보육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어업에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
2. 농업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
3.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
4.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
5.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
6. 농어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어업인 위촉 확대
7.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
[제목개정 2017. 12. 28]

제15조(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) 군수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8>

1.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
2.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교육·상담·화합의 행사 추진
3.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
4.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

증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

5.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7. 12. 28]

제16조(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)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[제목개정 2017. 12. 28]

제17조(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)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8>

[제목개정 2017. 12. 28]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11. 8 조례 제506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㉔ 증평군 여성 농·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㉔ 부터 ㉔ 까지 생략

부칙(2017. 12. 28 조례 제791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2. 28 조례 제845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2. 29 조례 제955호,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

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7호, 조직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
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,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